

■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별표] <개정 2021. 12. 31.>

근무성적 등 평정자

평정 대상자	평정자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선임재판연구원,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사법지원실장·사법정책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지원장	소속 고등법원장
각급 법원 근무 판사(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지원장 제외)	소속 법원장 또는 소속 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비서실 판사·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포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사법지원실장·사법정책실장 제외) 및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정대상이 되는 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 근무 판사	법원도서관장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 근무 판사 연구위원 및 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장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	윤리감사관
재판연구원(선임재판연구원 제외)	수석재판연구원
소속 법원을 달리하는 겸임(직무대리 포함) 판사 또는 소속 법원장이 2인 이상인 판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